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재현

전화 064-729-4422 / 팩스 064-729-8359

보도자료  
2020. 5. 12.(화)

### 제 목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범 불구속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금일(5. 12.)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제주지방검찰청은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

####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 피고인

- A○○(45세, 자영업)

##### ○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

- '20. 3. 24.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20. 3. 26.부터 4. 7. 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 중 '20. 3. 30. 주거지를 이탈하여 개인 용무를 보는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 ② 수사경과

- '20. 3. 31. 제주시, 피고인 고발
- '20. 5. 1. 제주서부경찰서, 송치
- '20. 5. 12. 피고인 불구속 기소

## ③ 참고사항

- 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 특히,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

※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 4.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음(종전 300만원 이하 벌금) ☒